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보완에 관한 규정

제정 2010. 1. 15. 국립국어원 예규 제 70호
개정 2012. 1. 31. 국립국어원 예규 제 75호
개정 2013. 12. 26. 국립국어원 예규 제 94호
일부개정 2014. 3. 10. 국립국어원 예규 제108호
일부개정 2017. 12. 28. 국립국어원 예규 제135호
일부개정 2019. 1. 14. 국립국어원 예규 제141호
일부개정 2020. 9. 23. 국립국어원 예규 제151호
일부개정 2021. 1. 26. 국립국어원 예규 제152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보완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14.>

제 2 조(용어의 정의) '국립국어원 국어사전'이란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을 말한다. <개정 2019. 1. 14.>

제 3 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내용의 보완 및 수정 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보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 14.>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내부 위원은 사전팀장, 어문연구과의 사전 담당자, 어문연구과의 어문규범 담당자, 공공언어과의 용어 표준화 관련 담당자 등 4명으로 하고, 위원회의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외부 위원을 5명 이내로 따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1. 1. 26.>

④ 위원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어심의회 개최 시기 등에 따라 개최 시기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12.28]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표제어 · 뜻풀이 추가를 포함한 사전 정보 수정 · 갱신 사항(이하 '정보보완 사항'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 14.>
2. 위원회의 안건 중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판단하여 국어규범정비위원회와 국어심의회에 상정할 안건 결정
3.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오류 수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9. 23.>

⑥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간사는 어문연구과 소속직원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 안건 준비,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그 밖에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⑧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용어 및 관계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9. 1. 14.>

제 3 조의2(외부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제3조제3항의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장기 여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4조(정보 보완 절차 및 결과 반영) ① 삭제

② 정보 보완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국어원 국어사전에 반영한다. 다만, 오류 수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3.>

③ 정보 보완 사항 중 국어규범위원회와 국어심의회에 상정하여 논의할 사항은 국어규범위원회와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국립국어원 국어사전에 반영한다. <개정 2019. 1. 14.>

부 칙 <2010. 1.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 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 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위원 임기 등을 이유로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